무허가 축사 적법화 처리절차 안내

- 추진대상 : 무허가 축사를 포함하고 있는 축산농가
- 무허가 축사 적법화 완료 기한 : 2018년 3월 24일까지

● 적법화 방법

분 야	내 용	부 서	연락처
건축	• 불법건축물(축사) 현황측량 문의(측량-건축설계사무소) • 불법 건축물(축사) 자진신고 • 이행강제금 납부 •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• 건축 허가 · 신고	건 축 과 (건축관리담당)	☎ 831-3225~8
환경	•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 허가 · 신고	환 경 위 생 과 (수질보전담당)	☎ 831-2773
축산	• 축산업 허가(등록) 변경 신고(허가)	농 축 산 과 (축 산 담 당)	☎ 831-3776,3785

- 적법화 기간내(18. 3. 24까지) 미 이행시 불이익 처분
  - 관련 개별법에 따라 처벌

사 천 시
(농 축 산 과)

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따른 처리절차 (인·허가 등)

① 불법건축물 현황 측량	• 건축과에 문의 • 지적현황 측량 : 한국국토정보공사(구. 대한지적공사) 및 측량설계사무소에 측량의뢰
② 불법건축물 자진신고	• 자진신고서 작성 ➡ 건축과
③ 이행강제금 부과·납부	• 이행강제금 부과시 납부 ➡ 건축과
④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	•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및 제5항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 요건 충족 시 건축과에 제출
⑤ 건축 허가 또는 신고	• 건축물 동별 400㎡ 초과는 '건축허가 신청서' 동별 400㎡ 이하는 '건축신고서' 작성 ➡ 건축과
⑥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(신고)	• 가축분뇨법 시행령 별표1 및 별표2에 따라 배출시설 규모에 따라 설치 허가 또는 신고서 작성 ➡ 환경위생과
⑦ 축산업 허가(등록) 변경 신고	• 축사 건축 허가(신고) 등으로 가축사육시설 면적이 변경된 경우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사항 변경 신고 ➡ 농축산과